



환 경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석면 적정관리를 위한 지침 등에 관한 통보

그간 지자체, 민원인 등으로부터 제기되어 온 개인 주택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석면 처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배출자에 의한 폐석면 수집·운반 가능 여부에 대한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지침 (또는 제도 안내)을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의 범위 설정

o (배경) 개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석면은 수집·운반 업체를 구하기도 어렵고, 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할 경우 개인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등의 현장 불편 해소 필요.

o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의 범위) 개인 가정에서 건축물의 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으로써 그 양이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대상(100kg) 미만인 경우로 한정,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설비가 100kg을 초과하나 100kg 미만으로 분리하여 해체·제거 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시 수집·운반종 발급 규정 안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o (개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물 수집·운반업자를 통하지 않고 사업장 밖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써 폐석면 개인배출자도 이용 가능

o (세부 내용 및 절차)

-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3일전까지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

-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종을 발급(수집·운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5 제4호가목 참조)

- 임시 차량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종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3. 노동부 석면 해체·제거 신고서 공유 안내

o '09. 8. 7일부터 노동부의 석면 해체·제거 신고 내용 중 건축물 위치, 해체기간, 석면함유 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등 폐석면 관리에 필요한 자료가 올라오시스

템을 통하여 매일 관할 기초 지자체, 광역지자체 및 지방환경청으로 통보될 예정인 바, 석면 해체·제거 현장의 폐석면 적정 처리 여부 확인에 활용하시기 바람. 끝.

환경부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전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서울특별시(자원순환담당관),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환경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환경자원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

환경사무관 민흥기 과장 전결 07/23
최종원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1837 (2009. 07. 24.) 접수
우 427-729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http://www.me.go.kr
전화 21106934 전승 502-4386 / minj0703@me.go.kr / 대국민공개